

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
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박 검 수

2016년 5월 20일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국 및 부서명칭 변경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생활국을 생활복지국으로 개정(안 제4절, 제18조)

나.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개정 (안 제18조, 제19조)

다. 그 밖에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어문규정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
2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

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”을 “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규정」 제13조제2항”을 “규정」 제13조제2항”으로, “설치조례」 제2조”를 “설치 조례」 제2조”로 한다.

제2장제4절의 제목 “주민생활국”을 “생활복지국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주민생활국)”을 “(생활복지국)”으로 하고, 제18조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 제목 “(주민생활지원과)”를 “(복지정책과)”로 하고,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 등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의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의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의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의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의 “주민생활국장, 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, 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의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의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⑦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중 제14호의 제목 “14. 주민생활지원과”를 “14. 복지정책과”로 한다.